

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관련 247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 안 년 월 일 : 2021년 06월 21일  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감면시행에 따른 홍보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 등에 필요한 절대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. (부칙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1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4조(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: <u>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</u>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부칙</u>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<u>부칙</u> <u>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11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4조(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